보건복지부 | 보도참고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출발의 나라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. 5. 20.(화)

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 개최

- 보건의료 분야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 확산 위한 소통강화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(원장 염민섭)은 **5월 20일(화) 15시 서울시 중구 부영태평빌딩**에서 **의료계·학계·산업계·공공기관** 등 **연구자 대상**으로 「**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***」 **현장 설명회를 개최**했다.

*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처리 기준과 방법, 절차 등을 제시한 안내서('20.9.~)

이번 설명회는 **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현장에 직접 안내**하고,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들의 **애로사항을 청취**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해당 **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분야**에서 **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·활용**할 수 있도록 **처리 기준, 절차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** 및 **결합제도 이용 방법**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, **실제 연구사례를 반영한 시나리오**와 **자주 묻는 질문(FAQ)**을 포함해 **현장 적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**이다.

설명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**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**하고, 2024년 12월 **개정된 내용***과 **가명 정보 결합제도 및 실무적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도 병행**하여 **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.**

*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 처리 기준, 가명 처리 예시 코드 공개, 개인생성 건강데이터(PGHD) 표준 가이드라인 등

보건복지부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"**의료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**하느냐에 달려있다" 라며, "정부는 앞으로도 **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,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**" 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1.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 계획
2. 「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」 개요

담당 부서	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	책임자	과 장	백영하 (044-202-2940)
		담당자	사무관	박희정 (044-202-2941)
담당 부서	한국보건의료정보원 데이터활용지원사업단	책임자	단 장	정집민 (02-6263-8334)
		담당자	과 장	정승원 (02-6263-834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**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 계획**

□ 추진배경

○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 및 가명 정보 제도 안내로 데이터 활용 현장 이해도 제고

○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 촉진

□ 개 요

○ **(일시/장소)** ‘25.5.20.(화), 15:00~17:00,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

○ **(참석자)** 의료기관, 산업계, 연구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

○ **(주요내용)** 보건의료 분야 가명 정보 활용제도 안내 등

□ 세부일정

시간	내 용	비 고
15:00～15:05(‘05)	설명회 안내 및 인사말	
15:05～15:30(‘25)	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법·제도 이해	
15:30～15:55(‘25)	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소개	
15:55～16:20(‘25)	가명정보 결합제도	
16:20～16:25(‘5)	25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제도 행사 안내 * DRB위원 대상 워크숍, DRB 간사 대상 심화교육	
16:25～17:00(‘35)	질의·응답 및 마무리	

붙임 2 「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」 개요

□ 추진배경

○ 데이터3법 시행('20.8월)으로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*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신용정보법' 이라 함)

○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공개

* (최초발간) '20.9월, (1차개정) '21.1월, (2차개정) '22.12월, (3차개정) '24.1월, (4차개정) '24.12월

□ 주요내용

○ **(가명처리 방법)** 정형 및 비정형(의료영상, 유전체 등) 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하여, 유형별 개인식별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처리 방법 제시

○ **(데이터제공심의방법)** 가명처리 목적의 적합성, 가명정보 처리 적적성 평가,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관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절차 제시

○ **(제공·활용절차)** 가명정보 활용 사례별(기관 내 활용, 제3자 제공,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) 절차를 제시

○ **(주요서식)**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신청 및 제공, 기간 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등의 표준 서식 수록

○ **(안전·보호조치)** 법령상 규정된 안전성 확보조치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·관리, 가명정보 분리 보관 및 접근 관리 등

○ **(기타)**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빈번한 문의 사항(FAQ) 수록, 다른 법률(의료법, 생명윤리법) 유권해석 수록 등